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① 필수서류 수령

-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하기



② 수급자가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 찾기

- 수급자 관할지사 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확인
- 수급자 관할지사 외(타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확인하여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평가등급) 클릭



③ 장기요양 기관과 서비스 계약

-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서비스 상담 및 계약 요청하기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 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 계약 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비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④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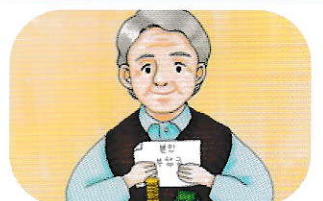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된 급여제공계획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 급여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⑤ 본인부담금 납부

-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① 필수서류 수령

-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하기



② 수급자가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 찾기

- 수급자 관할지사 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확인
- 수급자 관할지사 외(타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확인하여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평가등급) 클릭



③ 장기요양 기관과 서비스 계약

-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서비스 상담 및 계약 요청하기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 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 계약 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비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④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된 급여제공계획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 급여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⑤ 본인부담금 납부

-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



0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¹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²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³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⁴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참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3)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옹구사양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시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4)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또는 이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를 말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⁵⁾)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24쪽 참조)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20쪽 참조)

5)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